

서울특별시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임종국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동 조례는 2011년 「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(이하 ‘실무위원회’)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.
- 본 조례 제13조(존속기간)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는바, 위원회가 2017년 6월 12일 공식적으로 임기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

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